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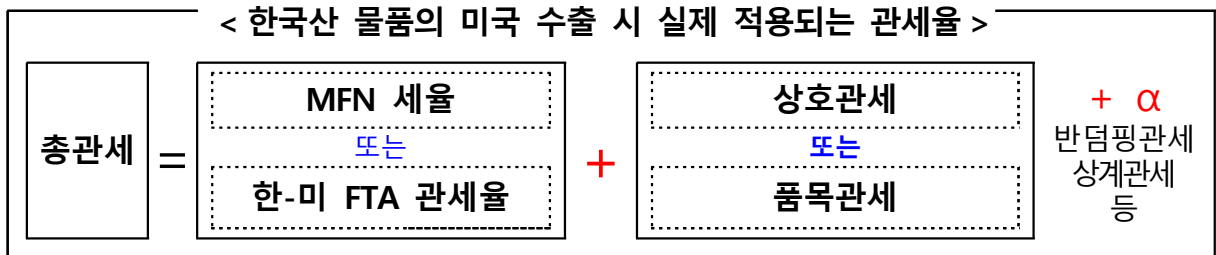
미국의 관세 부과 현황 안내(25.9.19. 기준)

- 미 정부는 ❶국제비상경제권한법 등에 따른 상호관세와 ❷무역확장법에 근거한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<미국의 관세조치 변동 현황>

구분	근거	대상	세율	시행일
상호관세	국제비상 경제권한법 등	모든 국가	10%	04.05.
			국가별 차등 (한국 15%)	08.07. (10% ⇒ 국가별 차등 부과 방식으로 변경)
품목관세	무역확장법 제232조	① 철강,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	50% (함량과세)	03.12. 06.04. 세율 상향 (25% ⇒ 50%) 06.23. 세탁기 등 추가 08.18. 428개 추가
		② 자동차 및 특정자동차부품	25%	04.03.(자동차) 05.03.(부품)
		③ 구리 반제품 및 파생제품	50% (함량과세)	08.01.

- 상호관세와 품목관세는 MFN* 세율 또는 한-미 FTA 관세율에 추가하여 부과됩니다.



* MFN(최혜국 대우, Most Favored Nation) 세율은 미국이 WTO 체약국에 대해 통상적으로 부과하는 기본 관세율을 의미합니다.

- 함량과세 대상인 철강, 알루미늄, 구리 품목은 함량부분은 품목별 관세가 비함량부분은 상호관세가 부과됩니다.

<제품 구성비율>		<적용 세율>
10%	철강·알루미늄·구리 함량	⇒ (MFN 또는 한-미 FTA 세율) + 품목관세 50%
90%	非 함량	⇒ (MFN 또는 한-미 FTA 세율) + 상호관세 15%

- 미측의 관세정책에 따라 수출 품목의 관세율은 급변하고 있습니다. 같은 품목군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른 종류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<자동차부품별 대미 수출시 관세율 차이>

구분	품목(예시)	관세율	비고
자동차 부품 관세	타이어, 에어백, 엔진 등	25%	한-미 협상 결과 15% 적용 예정
철강 및 그 파생제품 관세	기어, 플라이휠, 볼트 등	50%(철강 함량) 15%(철강 非함량)	
상호관세	차량용 리모콘, 후방카메라 모듈 등	15%	